

## 2020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공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73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3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8 및 「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」에 따라 2020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1일

행정안전부장관

### □ 인증 대상

-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
  -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
  -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
  - 그 밖에 국민이 사용·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

※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제외

### □ 인증 절차



※ 1차 인증심사, 현장심사, 2차 인증심사(필요시)에 신청인 참석

## □ 신청서 제출

- 제출기간 : 2020. 7. 1. (수) ~ 7. 31. (금) 18:00
- 제출방법 : 우편(등기) 제출(7.31. 18:00 이전 도착분에 한함)
  - 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 1부(원본이 아닌 경우 접수 불가)
  - 저장매체 1개(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스캔한 파일)
    - ※ (30128)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, 행정안전부 709호(재난안전산업과)
- 신청서(첨부서류 포함)

1.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(붙임 1 참고)
2. 재난안전제품 설명서(붙임 2 참고)
3. 청렴 서약서(붙임 3 참고)
4.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·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
5. 다른 법률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
6. 논문 또는 학술지 등 신청제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7.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(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)

※ 접수된 신청서(첨부서류 포함)는 반환되지 않음(「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」 제3조제5항)

## □ 추진 일정

주요내용	제 2 회	2021년 (예정)
신청서 제출	7월	2021년도 인증심사 2회 또는 3회 시행 예정
신청서 검토 및 접수	8월	
1차 인증심사	8월 ~ 9월	
현장심사	9월	
2차 인증심사	10월	
의견수렴	11월 ~ 12월	
인증서발급	12월	

※ 추진일정은 신청제품의 건수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□ 문의처

- 행정안전부(044-205-4187),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(031-679-9601)

##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6개월
------	-----	----------

신청인 정보	업체명 (성명)	대표자						
	설립일	사업자등록번호 (생년월일)						
	종업원 수	명	자본금	백만원	매출액	억원	수출액	만\$
	기관유형 [ ]대기업 [ ]중견기업 [ ]중소기업 [ ]국공립 연구원(소) [ ]정부출연 연구원(소) [ ]대학교 [ ]기타							
	소재지 (주소)	(본사)						
	(공장)							

신청제품	제품명	모델명(규격), 인증번호, 인증유효기간					
	연장사유						
	매출액(전년도 실적, 해당 연도 계획)	억원	수출액(전년도 실적, 해당 연도 계획)	만\$			
	주 수요처						
	제품 설명(요약)						

업무 담당자	소속	직위					
	성명	연락처(전자우편)					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73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업체명  
대표자(성명)

(서명 또는 인)

## 행정안전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설명서 2.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·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 3.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4. 논문 또는 학술지 등 해당 재난안전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자료 5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	수수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	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81조3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수료

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\*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\* 동의함[ ] 동의하지 않음[ ]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**재난안전제품 설명서**

(6쪽 중 제1쪽)

일반현황	신청제품명	한글		
		영문		
	업체명	한글		
		영문		
	소재지	한글		
		영문		
	대표자	한글	전화번호	
		영문		
	종업원 수 (명)		자본금 (백만원)	
	총 매출액 (백만원)	직전년도	총 수출액 (천\$)	직전년도
		금년실적 및 계획		금년실적 및 계획
	신청제품 매출액 (백만원)	직전년도	신청제품 수출액 (천\$)	직전년도
		금년실적 및 계획		금년실적 및 계획
	주 생산품			
주 거래처				
신청제품 주 수요처				
동종업체	국내			
	국외			
신청제품 주 경쟁업체	국내			
	국외			
인증실적	[ ] 신기술/신제품 인증      [ ] 우수조달제품      [ ] 기타 기술인증 인증명(제품명)			
동일 품목의 기 인증 여부				

신청제품 설 명	용도	
	제품의 구조	
	제품 작동원리	
	신청제품의 우수성 및 핵심내용	

신청제품 설 명	기존 제품의 문제점 및 개선내용	기존 제품의 문제점			
		개선방법(핵심기술 및 개선결과)			
	개발기술 핵심내용				
	제품 주요성능	평가항목	신청제품	국내 기존제품	국외 기존제품
	국내 경쟁제품과의 기술성 비교				

신청제품 개발이력	개발방법					
	개발기간					
	개발비	천원(자체자금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천원)				
	국산화율	% (원가금액대비)				
		주요 수입품				
	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	구분 (등록여부)	등록 또는 출원번호(일자)	제목	등록 또는 출원 핵심내용 요약	
		특허(출원)				
특허(등록)						



품질경영 체 계	상품·가공품의 품질기준 수립 및 관리	
	종업원 대상 품질경영에 교육훈련 실시	
	불합격시의 조치계획	
	해당제품의 품질검사 업무관장	
	기타 품질 경영 사항	

## 청렴 서약서(신청인)

업 체 명 :

대 표 자 명 :

신청제품명 :

본 사(인)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렴실천에 적극 협조 하겠으며, 위반할 시에는 신청서 반려 및 인증신청 제한 등 행정제재도 감수 하겠습니다.

1.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렴실천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 (담당 직원 및 심사 위원에게 금품 및 식사, 향응 제공 등)도 하지 않겠습니다.

2.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 등을 통하여 담당 직원 및 심사 위원에게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겠습니다.

년 월 일

업 체 명 :

대표자명 : (서명)

행정안전부장관 귀하